

## 결 정

2018 - 1047 신문윤리강령 위반  
중부일보 발행인 임재울

## 주 문

중부일보 2018년 2월 12일자 1면 「엄태준<민주당> 선두… 김경희<한국당> 5.8%差 추격」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# 이 유

1.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

『6·13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격전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천시장 선거에서 여·야 후보군 중 더불어민주당의 엄태준 후보자가 적합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천 지역은 출마후보자가 두자리 수를 넘게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각 후보자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.

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중부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1천1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을 통해 여야 이천시장 후보군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엄태준 후보가 총 응답자의 21.9%를 얻어 2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의 김경희(16.1%) 후보자를 5.8%p 차이로 앞선 선두를 기록했다.

후보 적합도에서 두 자리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엄태준 후보와 김경희 후보가 유일했고 3위 최형근(7.7%) 후보자부터 권혁준(5.6%), 김정수(5.2%), 오문식(4.9%), 이현호(4.5%), 이한일(4.5%), 오형선(4.0%), 김진목(3.8%), 김학원(3.7%) 후보자들은 한 자리 수 적합도에 머물렀다.

기타후보는 1.4%를 기록했으며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5.5%, 잘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율은 11.2%를 기록했다.(후략)』

<<http://www.joongboo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228636>>

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중부일보는 리얼미터에 의뢰한 6·13 지방선거 경기도 이천시장 출마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1면톱으로 보도했다.

기사는 『이천시장 선거에서 여·야 후보군 중 더불어민주당의 엄태준 후보자가 적합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』고 전하면서, 『민주당의 엄태준 후보가 총 응답자의 21.9%를 얻어 2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의 김경희(16.1%) 후보자를 5.8%p 차이로 앞선 선두를 기록했다』고 기술했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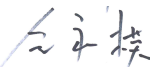

중부일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 $\pm 3.1\%$ 포인트이다. 따라서 엄태준, 김경희 후보의 적합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인 만큼 우열이 가려졌다고 보기 어렵다. 그럼에도 기사는 엄태준 후보에 대해 『5.8%p 차이로 앞선 선두』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제목에도 반영했다.

위 기사와 제목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. 이는 ‘신문윤리강령’과 ‘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’을 위반하는 것이며,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,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「보도와 평론」,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전문,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「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」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 용 담
위원	정 승 호	정 승 호
	장 명 국	장 명 국
	박 재 현	박 재 현
	장 인 철	장 인 철
	김 규 식	김 규 식
	강 희	강 희

하 윤 수   
김 영 모   
박 미 경 

---

○ 적용 조항

**신문윤리강령 제4조 「보도와 평론」**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, 객관적으로,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.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,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.

**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** 보도기사(해설기사 포함)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.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·보도해야 한다.

**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(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)**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.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“경합” 또는 “오차범위 내에 있다”고 보도한다. ③위 경우 “오차범위 내에서 1, 2위를 차지했다”거나 “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”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.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.